#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747

발의연월일: 2021. 12. 8.

발 의 자:박 정·김홍걸·김회재

남인순 • 박성준 • 오영환

유정주・이상헌・이수진비

임오경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총 15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세계유산이 조선왕릉(40기), 한국의 서원(9개소)과 같이 연속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음. 최근 김포 장릉지역 아파트 건설 사례와 같이 세계유산주변지역은 다양한 잠재적 개발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한 커지고 있음.

세계유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우리나라의 문화재 관리 체계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세계유산 등재 취소로도이어질 수 있는 사항으로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세계유산 주변에서의 개발사업 등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여 세계유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거나 감소할 수 있도록 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대상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유산의 가치 훼손을 방지하고 유네스코 세계 유산 지위 및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 안 제11조의2부 터 제11조의8까지 신설 등).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세계유산영향평가"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세계유산의 탁월 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여 세계유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세계유산 완충구역이 「문화재보호법」 제23조(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 제25조, 제26조, 제70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과 중복되는 지역은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실시 등) ① 세계유산지구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1.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사업
- 2. 그 밖에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세계유산의 특성 및 입지 여건 등으로 인하여 세계유산지구 밖에서 대상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문화 재청장은 사업자에게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상사업의 구체적 범위,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방식 및 절차 등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의3(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제출 등) ① 사업자는 세계유산 분야 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이하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이라 한다)에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수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이 수행한 세계유산영향평가 결과를 정리한 서류(이하 "세계유산영향평가서"라 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제출 방식·시기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의4(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 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세계유산영향평가서 또는 대상사업계획 등(이하 "대상사업계획 등" 이라 한다)을 보완·조정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보완·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의5(보완사항의 반영 및 확인 등) ① 사업자는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보완·조정을 요청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대상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문화재청장은 대상사업계획 등에 제1항의 보완·조정 사항이 반영되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이경우 보완·조정 사항이 대상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 제11조의6(평가결과의 이행 및 관리·감독 등)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할 때에 대상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② 문화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제출한 정기점검 결과를 분석·평가할 때 사업자가 대상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내용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제11조의7(허가 등의 의제) 사업자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제 11조의5제2항에 따른 확인 및 반영이 완료된 경우에는 「문화재보 호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11조의8(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문화재청장은 사업자 또는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지원을 위하여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세계유산영향평가 관련 국제 동향 파악 및 조사·연구
  - 2. 세계유산영향평가 관련 전문인력 양성 교육
  - 3. 세계유산영향평가 사전 컨설팅 및 사후 평가, 모니터링 지원
  - 4. 그 밖에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③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3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u><신</u>설> 3. "세계유산영향평가"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세계유 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 가하여 세계유산에 대한 부 정적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세계유산지구의 보호) ① 제11조(세계유산지구의 보호) ① 문화재청장이 제10조에 따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 또는 변 경한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 이 정해진 것으로 본다. <단서 -----. 다만. 세 계유산 완충구역이 「문화재보 신설> 호법」 제23조(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 제25조, 제 26조, 제70조에 따른 지정문화 재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과 중복되 는 지역은 제2호를 적용하지 아 1.·2. (생 략) ② (생 략) <신 설> 니한다.

- 1. 2.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제11조의2(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실시 등) ① 세계유산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대상 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 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야 한다.
  - 1.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사업
  - 2. 그 밖에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 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세계유산의 특성 및 입지 여건 등으로 인하여 세계유산 지구 밖에서 대상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이 세계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 하다고 인정되면 문화재청장은

- <u>사업자에게 세계유산영향평가</u> 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 상사업의 구체적 범위, 세계유 산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방식 및 절차 등 세부기준과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제11조의3(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제출 등) ① 사업자는 세계유산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기관이나 법인(이하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이라 한다)에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수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이 수행한세계유산영향평가 결과를 정리한 서류(이하 "세계유산영향평가 가서"라 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으로 지

<신 설>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제출 방식·시기 및절차와 제3항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4(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문화재청장은 세 계유산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 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세계유산영향평가서 또는 대상사업계획 등(이하 "대상사업계획 등"이라 한다)을 보완·조정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보완·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의5(보완사항의 반영 및 확인 등) ① 사업자는 제11조의 의4제2항에 따라 보완·조정을 요청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대상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

<신 설>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대상사업계획 등에 제1항의 보완·조정 사항이 반영되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조정사항이 대상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의6(평가결과의 이행 및 관리·감독 등) ① 사업자는 대 상사업을 시행할 때에 대상사 업계획 등에 반영된 내용을 이 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제출한 정기점 검 결과를 분석·평가할 때 사업자가 대상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내용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11조의7(허가 등의 의제) 사업 자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

하고제11조의5제2항에따른확인및 반영이완료된경우에는「문화재보호법」제35조제1항제1호및 제2호의허가를받은것으로본다.

- 제11조의8(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 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문화 재청장은 사업자 또는 세계유 산영향평가기관의 세계유산영 향평가 실시 지원을 위하여 세 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 영할 수 있다.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세계유산영향평가 관련 국제 동향 파악 및 조사·연구
  - 2. 세계유산영향평가 관련 전문인력 양성 교육
  - 3. 세계유산영향평가 사전 컨설팅 및 사후 평가, 모니터링지원
  - 4. 그 밖에 세계유산영향평가의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사업

③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